

## 2017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 1. 2016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

- 가. 서울시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 사업 시행
  - 행사일시 : 2016. 10. 5.(수) / 2016. 10. 7.(금)
  - 참가인원 : 1차 35명, 2차 25명 총 60명
  - 코스 : 흥인지문 - 한양도성 낙산구간 - 혜화문
  - 주요내용 : 한양도성 야간 답사여행

- 나.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연수교육

- 교육일시 : 2016. 10. 15.(토)
  - 교육대상 :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 2, 3급 신규 자격 취득자
  - 장소 : 라이나생명보험 지하 1층 전성기캠퍼스
  - 교육내용 : 서울도시문화의 정의와 지도사의 역할 등

- 서울도시문화지도사 현황

구 분	명 예	마스터	1급	2급	3급	계
명 수	53	6	7	17	20	103

- 다. 종로구청 『종로역사인물열전』 사업 시행

- 교육일시 : 2016. 10. 26 - 12. 23, 10시 ~12시 (10차시)
  - 교육인원 : 38명 중 36명 수료(수료생중 22명 회원신청)
  - 교육내용 : 종로가 낳은 인물에 대한 강의, PMI 활동 및 답사 등
  - 소개인물 : 정도전, 김정희, 박지원, 정선, 박자청, 이항복, 이상 등 7명

- 라. 2016년도 사업결산

- 수입 · 지출 결산요약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수지차액
26,515,611	22,310,012	4,205,599

- 수입 · 지출 세부내역 : 별첨 참조

## 2.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신규사업

#### 가.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

- 목 적 :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기업 및 개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본원의 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 2017년 상반기 중
- 지정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
  -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 나.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지도교재 발간

- 제 목 : 서울도시문화 개론(서울도시문화지도사 연수용 교재)
- 집필기간 : 2017년 상반기 중
- 수록내용 : 서울도시문화 이해 등 15차시 분량(250 ~300쪽)
- 집 필 자 : 노주석, 이준섭, 이소영, 류수근, 최서향

#### 다. 서울탐험(가칭) 모임 운영

- 코 스 : 서울 25개 자치구, 한양도성 6개 코스 및 북한산 둘레길 등
- 모임대상 : 회원 중 희망자
- 모임주기 : 월 1회 3째주 토요일(참여 인원에 따라 확대 및 조정)
- 결성시기 : 2017년 3월 25일(창립기념일)

#### 라. 『언론인 한양도성 생태순성』 사업

- 행사일시 : 2017년 5월 13일(주간, 남산), 5월 27일(야간, 낙산)  
주야간 2회 시범실시 후 연간 실시
- 코 스 : 남산, 낙산 등 2개 구간
- 주요내용 : 언론인 50명과 동행, 생태문화 답사
- 주 최 : 삼성언론재단

#### 마.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3월~11월
- 주요내용 : 한양도성 관련 옛 그림 전시 등
- 주 최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 ◇계속사업

가.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자격증 인증교육

- 교육일시 : 2017년 상반기 중
- 교육대상 :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신규 자격취득 희망자(30여명)
- 장소 : 전성기캠퍼스
- 교재 : 서울도시문화 개론

나. 『제2회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 용역사업

- 행사일시 : 2017년 9월 중
- 코스 : 흥인지문 - 한양도성 낙산구간 - 혜화문
- 주요내용 : 한양도성 야간 순성
- 주최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다. 『제2회 종로인물열전』 용역사업

- 교육일시 : 2017년 상반기 중(10차시)
- 교육내용 : 종로가 놓은 인물에 대한 강의, PMI 활동 및 답사 등
- 주최 : 종로구청

※ 2017년도 사업예산(안)

- 수입 · 지출 결산요약

예산위 : 원

수입	지출	수지차액
95,755,000	80,600,000	15,155,000

- 주요사업 예산(안) : 별첨 참조

## 3. 정관 개정

가. 개정 목적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법률적 필요조건 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정관에 명기
- 정관 내용의 명확화 및 불필요 조문 정비와 단순 문구 수정

나. 정관 개정(안) : 정관 개정(안) 비교표 별첨 참조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조문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 고
(해당조문 없음)	<p><u>제39조(기부금 내역 공개) 본원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suci.kr">www.suci.kr</a>)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신설</li> <li>○ 조문신설</li> </ul>

○ 정관 내용의 명확화 및 불필요 조문 정비와 단순 문구 수정

대 상 조 문		개정 주요사유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구분 명확화 및 학생회원 추가</li> <li>◦ 문구 수정</li> </ul>
	제6조(회원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권리 명확화 및 문구 수정</li> </ul>
제3장 총회	제13조(의결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 위임방법 명확화 및 문구수정</li> <li>◦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가능 명문화</li> </ul>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수정</li> </ul>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장 정수 명확화 및 문구수정</li> <li>◦ 명예이사장 및 고문제도 명문화</li> </ul>
	제30조(명예이사장, 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이사장 및 고문의 보수지급 문구 삭제</li> <li>◦ 문구 수정</li> </ul>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 수정</li> </ul>
	제34조(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 조달방법 구체화</li> </ul>
제7장 조직 및 사무국	제41조(부서 및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및 위원회, 연구소, 후원회, 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li> <li>◦ 조문변경 및 문구 수정</li> </ul>
	제42조(법인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ul>
	제43조(정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 및 문구수정</li> </ul>
	제44조(규칙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ul>
부칙	제1조(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신설</li> </ul>

첨부 #1

2016년도 수입·지출 세부내역

단위: 원

수 입		지 출		비 고
과 목	결 산	과 목	결 산	
1. 목적사업	18,980,000	1. 목적사업	19,371,021	
가.자격증발급 및 연수	2,420,000	가.자격증발급 및 연수	1,530,201	◦지출 : 인쇄비, 발송비, 문구류 등
(1)지도자 응시료	1,120,000	(1)자격증 발급	1,316,301	
(2)지도자 연수비	1,300,000	(2)지도자 교육	213,900	
나.종로인물열전	9,760,000	나.종로인물열전	9,700,840	◦지출 : 강사료, 진행비, 인쇄비(교재, 수료집, 수료증) 등
(1)종로구청 지원비	9,000,000			
(2)참가자회비	760,000			
다.한양도성야행	6,800,000	다.한양도성야행	8,139,980	◦지출 : 강사료, 진행비, 기념품 등
(1)서울시 지원비	6,800,000			
2. 회 비	7,480,000	2. 경 비	2,938,991	
(1)임원	4,780,000	(1)회의 및 운영비	2,083,551	◦지출 : 사무용품, 회의식대 등
(2)회원	2,700,000	(2)제수수료	799,090	◦지출 : 조달청, 국세청 공인인증관련 경비
		(3)통신비	20,110	*사무실 전화료
		(4)교통비	36,240	
3. 사업외 수입	55,611			
(1)이자수입	1,811			
(2)잡수입	53,800			
당기수입	26,515,611	당기지출	22,310,012	
		(수지차액)	4,205,599	

첨부 #2

##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단위 : 원

수 입		지 출		비 고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b>1.목적사업</b>	<b>81,500,000</b>	<b>1.목적사업</b>	<b>77,000,000</b>	
가.지도사 양성	10,500,000	가.지도사 양성	6,000,000	◦ 수입 - 교육비:30명×30만원 - 응시료:30명×5만원
(1)교육연수	9,000,000	(1)강사료	4,000,000	
(2)자격증시험	1,500,000	(2)인쇄비	2,000,000	
<b>나.위탁사업</b>	<b>71,000,000</b>	<b>나.위탁사업</b>	<b>71,000,000</b>	◦ 위탁사업의 경우 수입=지출
(1)언론인 한양도성 순성	15,000,000	(1)언론인 한양도성 순성	15,000,000	
(2)한양도성 약행	6,000,000	(2)한양도성 약행	6,000,000	
(3)종로인물열전	10,000,000	(3)종로인물열전	10,000,000	
(4)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40,000,000	(4)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40,000,000	
<b>2.회비</b>	<b>9,200,000</b>	<b>2.경비</b>	<b>3,600,000</b>	◦ 수입 - 임원:14명×30만원 - 회원:100명×5만원
가.임원	4,200,000	가.회의 및 운영비	3,000,000	
나.회원	5,000,000	나.제수수료	500,000	
<b>3.후원금</b>	<b>5,000,000</b>	<b>다.통신료</b>	<b>100,000</b>	
<b>4.사업외 수입</b>	<b>55,000</b>			
가.이자수입	5,000			
나.잡수입	50,000			
<b>당기수입</b>	<b>95,755,000</b>	<b>당기지출</b>	<b>80,600,000</b>	
		(수지차액)	<b>15,155,000</b>	

## 첨부 #3

##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정관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안)	비 고
<b>제1장 총 칙</b>	<b>제1장 총 칙</b>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현행 유지)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유지)
제3조(목적) 본원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원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유지)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분야의 기획·제작·전시·홍보·평생교육·기관 위탁 운영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분야의 기획·제작·전시·홍보·평생교육·기관 위탁 운영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2. 서울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및 탐사 프로그램의 운영</p> <p>3.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양성 및 자격증 발급</p> <p>4. 독서 진흥 및 도서 시설 운영을 통한 서울 고유의 문화 예술과 도시 문화 증진</p> <p>5. 의·식·주 관련 서울 전통문화 활성화</p> <p>6. 도시 어메니티(Amenities)자원의 발굴과 주민 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p> <p>7.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활동</p> <p>8. 도시 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세미나, 전시회, 국제 회의, 박람회 개최</p> <p>9.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회 원</p> <p>제5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p>	<p>2. 서울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및 탐사 프로그램의 운영</p> <p>3. 서울도시문화지도사 양성 및 자격증 발급</p> <p>4. 독서 진흥 및 도서 시설 운영을 통한 서울 고유의 문화 예술과 도시 문화 증진</p> <p>5. 의·식·주 관련 서울 전통문화 활성화</p> <p>6. 도시 어메니티(Amenities)자원의 발굴과 주민 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p> <p>7.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활동</p> <p>8. 도시 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세미나, 전시회, 국제 회의, 박람회 개최</p> <p>9.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회 원</p> <p>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u>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구분 명확화</li> <li>◦ 학생회원 추가</li> </ul>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연구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을 둘 수 있다. 회비 부과와 회원의 구분 등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p>	<p>②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인터넷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등으로 구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조직, 단체</li> <li>2. 준회원 :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개인, 조직, 단체</li> <li>3. 인터넷회원 :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홈페이지 활동만을 하는 개인 조직, 단체</li> <li>4. 명예회원 :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조직 또는 단체</li> <li>5. 학생회원 : 초. 중. 고교, 대학생으로 본원의 미래 정회원 양성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자</li> </ul> <p>③기타 회원 및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 수정</li> </ul>
<p>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연구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p>제6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본원의 모든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p> <p>②명예회원과 학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으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권리 명확화</li> <li>◦ 문구 수정</li> </ul>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현행 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현행 유지)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경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경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현행 유지)
제3장 총 회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1조(구분 및 소집)</p> <p>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p> <p>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한 가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1조(구분 및 소집)</p> <p>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p> <p>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한 가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현행 유지)
<p>제12조(임시총회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li>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li> <li>3.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p>	<p>제12조(임시총회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li>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li> <li>3.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p>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u>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u>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p> <p>③ <u>회원은 의결권을 총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u>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u>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 사전제출 명확화</li> <li>◦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가능 명문화</li> <li>◦ 문구 수정</li> </ul>
<p>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임원의 선출(상근임원 제외)</li> <li>3. 본원의 해산, 합병, 분할</li> <li>4. 사업계획의 승인</li> <li>5. 수지예산 및 결산승인</li> <li>6.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li> <li>7. 회비에 관한 사항</li> </ol>	<p>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임원의 선출(상근임원 제외)</li> <li>3. 본원의 해산, 합병, 분할</li> <li>4. 사업계획의 승인</li> <li>5. 수지예산 및 결산승인</li> <li>6.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li> <li>7. 회비에 관한 사항</li> </ol>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8.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② 사업계획의 승인, 수지예산의 변경,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li> <li>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li> </ol> <p><b>제4장 이사회</b></p> <p>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와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p> <p>제1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p>8.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②사업계획의 승인, 수지예산의 변경,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li> <li>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li> </ol> <p><b>제4장 이사회</b></p> <p>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u>이사장과 상임이사</u>, <u>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장은 이사회</u>의 <u>의장이 된다</u>,</p> <p>제17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현행 유지)
		◦ 문구수정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한 가지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p>	<p>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한 가지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p>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li> <li>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li> <li>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9.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li> <li>10.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li> <li>11. 상임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li> <li>12.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li> <li>13.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li> </ol>	<p>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li> <li>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li> <li>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li> <li>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9.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li> <li>10.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li> <li>11. 상임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li> <li>12.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li> <li>13.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li> </ol>	(현행 유지)
제5장 임 원	제5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21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①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문구수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p>1. 이사장 약간 명(1인의 대표 이사장 포함)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p> <p>제2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원의 원장에 보한다.      ③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결원이 발생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p> <p>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li> <li>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li> </ol>	<p>1. <u>이사장 1인</u>      2. 상임이사 1인      3. <u>이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u>      4. 감사 2인</p> <p>②본원은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명예이사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p> <p>제2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원의 원장에 보한다.      ③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결원이 발생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p> <p>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li> <li>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장 정수 명확화</li> <li>◦ 명예이사장 및 고문제도 명문화</li> </ul> <p>(현행 유지)</p> <p>(현행 유지)</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p> <p>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li> <li>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ul>	<p>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p> <p>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li> <li>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ul>	(현행 유지)
<p>제2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p>	<p>제2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p>	(현행 유지)
<p>제26조(상근임원) ①본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p> <p>②본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1인을 상근임원으로 한다.</p>	<p>제26조(상근임원) ①본원은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p> <p>②본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1인을 상근임원으로 한다.</p>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2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사임했을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향을 준용한다.</p> <p>③ 기가 만료된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단,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사임했을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향을 준용한다.</p> <p>③임기가 만료된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단,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현행 유지)
<p>제2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원의 업무를 처리한다.</p> <p>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li> </ol>	<p>제2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理事会의 의장이 된다.</p> <p>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원의 업무를 처리한다.</p> <p>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li> </ol>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p> <p>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5.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p> <p>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5.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현행 유지)
<p>제2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②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②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현행 유지)
<p>제30조(명예이사장, 고문) ①본원은 명예이사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p> <p>②명예이사장은 본원 관련 분야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p> <p>③고문은 본원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원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p>	<p>제30조(명예이사장, 고문) ①본원은 명예이사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p> <p>②명예이사장은 본원 관련 분야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p> <p>③고문은 본원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원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④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⑤명예이사장과 고문은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원으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p> <p>제31조(임원의 보수) ①상임이사를 제외한 본원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④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u>이사회</u>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⑤(<u>삭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구 수정</li> <li>◦명예이사장 및 고문의 보수지급 문구 삭제</li> </ul>
	<p>제31조(임원의 보수) ①상임이사를 제외한 본원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현행 유지)
<p>제6장 재산과 회계</p> <p>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li> <li>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li> </ol>	<p>제6장 재산과 회계</p> <p>제32조(재산의 구분)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u>발기인 노주석이</u>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li> <li>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구 수정</li> </ul>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변경 (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변경 (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유지)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u>재원조달</u> ) ① <u>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u> 1. <u>회원의 회비</u> 2. <u>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u> 3. <u>회원의 특별분담금 및 특별기여금</u> 4. <u>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의 지원금 및 개인 후원금</u> 5. <u>지정기부금</u> 6. <u>기타 수입금</u>	◦ 재원 조달방법 구체화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현행 유지)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7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 유지)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유지)
<u>제39조(기부금 내역 공개)</u> 본원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suci.kr">www.suci.kr</a> )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위한 문구
제7장 조직 및 사무국	제7장 조직 및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이사장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①이사장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39조(위원회와 본부 등 조직) ① 본원의 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위원회와 본부 등 조직을 둘 수 있다.</p> <p>② 각 위원회와 본부의 조직과 업무는 내규로 정한다.</p>	<p>제41조(부서 및 위원회) ①본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부서 및 위원회, 연구소, 후원회 등)을 둘 수 있다.</p> <p>②본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p> <p>③본원은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p> <p>④본원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연구소를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p> <p>⑤본원은 재정확충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li>◦ 부서 및 위원회, 연구소, 후원회, 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li> <li>◦ 문구 수정</li> </ul>
<p>제8장 보 칙</p> <p>제41조(법인해산) ①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장 보 칙</p> <p>제42조(법인해산) ①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ul>

현 행	개 정(안)	비 고
<p>②본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p> <p>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②본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p> <p>제43조(정관변경) <u>본원의</u>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li>◦ 문구 수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문 변경</li> </ul>
부 칙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성 명	주 소	날 인	성 명	주 소	날 인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현행 유지)
노주석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길 110, 103 동 202호(신당동, 신당푸르지오)		노주석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길 110, 103 동 202호(신당동, 신당푸르지오)		
신종원	경기도 과천시 뒷골1로 40, 2층 (과천동)		신종원	경기도 과천시 뒷골1로 40, 2층 (과천동)		
김승연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 움아파트 304동2803호		김승연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 움아파트 304동2803호		
( 신 설 )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 고																								
<p>붙임 1 기 본 재 산 목 록 (2016년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산구분(지목별)</th><th>수량 (㎡)</th><th>금액 (가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현금</td><td>1계좌</td><td>25,000,000원</td><td>예 금</td></tr> <tr> <td>【합 계】</td><td></td><td>25,000,000원</td><td></td></tr> </tbody> </table>	재산구분(지목별)	수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25,000,000원	예 금	【합 계】		25,000,000원		<p>붙임 1 기 본 재 산 목 록 (2016년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산구분(지목별)</th><th>수량 (㎡)</th><th>금액 (가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현금</td><td>1계좌</td><td>25,000,000원</td><td>예 금</td></tr> <tr> <td>【합 계】</td><td></td><td>25,000,000원</td><td></td></tr> </tbody> </table>	재산구분(지목별)	수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25,000,000원	예 금	【합 계】		25,000,000원		(현 행 유지)
재산구분(지목별)	수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25,000,000원	예 금																							
【합 계】		25,000,000원																								
재산구분(지목별)	수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25,000,000원	예 금																							
【합 계】		25,000,000원																								